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5호 2020. 4. 6.(월)

고 시

-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공원·산정근린공원)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2

공 고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3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2020 - 111호

목포시 도시계획시설(공원:산정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남 목포시 연산동 산45-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 : 산정근린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목 포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산45-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산정근린공원)사업
- 명 칭 :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금회사업시행면적 : 471,457m²
 - 공원시설 : 346,129.18m², 비공원시설 : 125,327.82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목포시
 - 성 명 : 목포시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 산정공원개발 주식회사
 - 성 명 : 산정공원개발 주식회사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93-1, 3층 324호(명륜동)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20년 4월 예정

목포시 공고 제 2020-561호**입 법 예 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6.

목 포 시 장**1. 제정 이유**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2. 주요 내용

-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운영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센터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센터직원의 임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센터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센터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시행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87,981천원

8. **입법예고** : 2020. 4. 6. ~ 2020. 4 27. <21일>

9.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도시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트윈스타행정타운 5층 도시문화재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061-270-3602, FAX 270-8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규칙(안)>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 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제19조 관련)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 터 장	•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팀 장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무 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문화 분야 : 역사, 인류, 관광, 예술 등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문화 분야 : 사학과, 인류학과,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등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등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등

[별표 2]

센터장 및 센터 직원 임무<사무분장>(제19조 관련)

직 책	임 무	비 고
센 터 장	•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사업계획의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팀 장	• 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정비계획 및 사업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건축자산 현황 조사, 매입 등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역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주민협의체 등) • 센터 시설 및 직원 복무 관리	
사 무 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정비계획 및 사업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건축자산 현황 조사, 매입 등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지원(주민협의체 등)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별표 3]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직 책	센 터 장	팀 장	사 무 원
월기본급	지방공무원 6급 13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7급 10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8급 7호봉 봉급 상당액

목포시 공고 제2020-562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1) 시행령 개정사항(“영 제9조제1항제4호”, “영 제38조제1항제25호”규정 삭제)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관련 조항 개정(안 제26조)

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한 조항 삭제 및 수정

- 1)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가능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4호)
-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 것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 (안 제28조제4항제2호)

- 3)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상위법령 근거 없이 대부건물의 층수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 (안 제31조제1항 ~ 제5항)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적용범위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1)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소집 및 심의 관련 단서조항 개정
 -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전은 서면심의 의결 가능 (안 제4조제6항)
- 2)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조항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 (안 제20조의2)
- 3)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2)
- 4)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중 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100분의 30이내' → '100분의 30')을 규정 (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제4항~제6항)

라. 관계법령 명칭변경 사항 및 용어 정비

-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 명칭변경 (안 제32조제2항)
- 2)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용어 정비 (안 제5조제2항제3호)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4조, 제2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제38조
-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8.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9. 입법예고 기간 : 2020. 4. 6. ~ 2020. 4. 27.(21일간)****10.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7일까지 목포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1),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회계과(☎ 061-270-3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전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삭제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본조 전부개정>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3.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 신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협(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중 “**건물평가액 및**”을 “**건물평가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times$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div$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times$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div$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32조제1항제3호에 사목 중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제4항 “법 제24조제2항,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를 “제20조의2제1호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로, 제5항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를 “100분의 30을”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대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u>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u>
⑦ ~ ⑨ (생략)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 <u>대장가액 5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u> 4. <u>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u>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u> ----- -- 4.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 제20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2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의한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u>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익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u> 1. <u>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u>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3.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우</u> <u>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u>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이 조례에서</u>----- ----- ----- ----- ----- -----.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개정안
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u>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u> 3. ~ 6. (생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u>건물평가액</u> 및 <u>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u> 다만, <u>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이하 같다) 평가하여야 한다.</u>	----- ----- -----. 1. (현행과 같음) 2. <u>「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u> 3. ~ 6. (현행과 같음)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 <u>건물평가액과</u> ----- -----. ② <u>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u> 1. <u>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u> 2. <u>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u>

현행	개정안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	<u>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u> ③ <삭 제>

현행	개정안
<u>의 5분의 1</u> <u>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u> <u>대부하는 경우</u> <u>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u> <u>분의 1</u> <u>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u> <u>분의 1</u> <u>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u> <u>의 4분의 1</u> <u>④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u> <u>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u> <u>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u> <u>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u> <u>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u> <u>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u> <u>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u> <u>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u> <u>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u> <u>트를 적용한다.</u> <u>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u> <u>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u> <u>공용면적 산출이 아주 불합리</u> <u>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u> <u>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u> <u>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u> <u>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u>	④ <삭 제> ⑤ <삭 제>

현행	개정안
<u>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2. (생략) 3. (생략) 가. ~ 바. (생략) 사. <u>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u>법 제24조제2항,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u> 감면할 수 있다. ⑤ <u>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u>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제27조제1호부터 제3호</u>----- ②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0조의2제1호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u>-----. ⑤ -----

현행	개정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수익허가(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u>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u> 감면할 수 있다.	----- ----- ----- <u>100분의 30을</u> -----.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u>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u>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u>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대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